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최보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395

발의연월일: 2025. 3. 27.

발 의 자:최보윤·김소희·최수진

김선교 · 김미애 · 엄태영

김 건 · 조경태 · 성일종

김재섭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, 공동주택 등 설치 의무 대상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일반적인 주유소는 주유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, 고령자, 임산부 등 교통약자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하차하지 않고 주유원을 통해 주유할 수 있으나,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경우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방식으로 설치되고 있으며 충전기의 위치, 케이블 등 구조적인 이유와 좁은 충전구역 등 교통약자를 고려하지 않은 구조로인해 교통약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방해요소가 되고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.

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 우 일정 규모 이상의 전용주차구역에는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하 여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에 대한 충전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의2제1항 후단 신설).

법률 제 호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때에는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교통약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환경친 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	제11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
전용주차구역 등) ① 다음 각	전용주차구역 등) ①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	
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
시설의 소유자(해당 시설에 대	
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	
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)는 대	
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	
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	
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	
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. <u><후</u>	<u>이 경우</u>
<u>단 신설></u>	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
	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
	모 이상인 때에는 「교통약자
	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2조제
	1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접근성
	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
	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
	<u>한다.</u>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~ ⑫ (생 략)	② ~ ⑫ (현행과 같음)